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성주군세감면조례의 감면적용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서민주거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종전에는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축소함.(제5조)

○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감면중 종전에는 주거용부동산에 한하여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부동산으로 감면을 확대함.(제9조)

○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감면대상에 추가함.(제11조 제1호)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세하도록 함.(제13조)

○ IMF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기간을 종전에는 5년에서 앞으로는 3년으로 축소함.(제14조)

○ 종전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자로 함.(제24조)

○ 수도권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신설함.(제25조)

○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종전에는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로 축소함.(제27조)

○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

는 한편,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함.(부칙)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 결과 및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ㅇ 예고기간 : 2003. 11. 5 ~ 11. 25 (20일간)
- ㅇ 예고방법 : 성주군공보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 ㅇ 결　　과 : 제출의견 없음

나. 참고자료

- ㅇ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 도 세정13400-12770('03.10.17)호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한다.

제7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중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를 "주민공동체가"로 하고,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중 "5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전문 개정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과밀억제권역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한다.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조례 제1676호 성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 제1조, 조례 제1686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제1항, 조례 제1700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1조중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1712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1733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조례 제1744호 성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부칙중 "시행한다."를 각각 "시행하되,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해당되는 경우에는 ·····
1.~2.(생략)	1.~2.(현행과 같음)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3. ·····자동차폐차영업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생략)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 제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을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 · ·

현 행	개 정 안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1. · · ·

현 행	개 정 안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 ····· ····· ····· ·····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3.(생략)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 ····· ····· ····· 2. ~3.(현행과 같음)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생략)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②(현행과 같음)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 ·····

현 행	개 정 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 ····· ····· ····· ····· ···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주민공동체가·· ····· ····· ·면제한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 ····· ····· ····· ·····

현 행	개 정 안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	·····3년간·····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날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현 행	개 정 안
	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2006년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현 행	개 정 안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 · ·